

기획조사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기획조사 06-040

한-EU FTA 추진 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요 약

- EU 통상정책의 주요 과제가 다자협상 및 유럽지역 통합 확대에서 비유럽권 국가와의 지역협정 체결 병행으로 변화중임.
 - EU는 다자협상 및 유럽 인근지역 통합확대를 통한 시장개방과 균형 이익 도출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DDA 협상의 지연과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의 FTA체결 증가 영향으로 비유럽권 국가와 FTA 체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EU의 비유럽권 FTA 관심지역은 아세안, 중남미 등이며, 개별국가별로는 한국, 인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시 이들국가와도 FTA 체결도 검토중임.

- WTO 체제 출범 이후 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환경,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EU FT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 예정임.
 - 상품분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기술장벽(TBT)의 경우 1995년 WTO 출범 당시 365건에 불과하던 WTO 통보건수가 2003년 794건, 2005년 771건으로 증가.
 - 美 업계와 행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이전부터 비관세장벽을 주요 의제로 표방했으며, 한-EU FTA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가 핵심의제로 논의 예정임.

- EU는 표준, 환경, 안전 관련 다양한 상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운영 중이며, 일부 표준, 인증 사항은 회원국별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기업에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EU의 비관세장벽은 표준, 인증, 환경관련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산업 분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이같은 규제 강화는 우리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규제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EU FTA 협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EU의 FTA 정책과 한-EU FTA 추진경과	3
II. EU의 비관세장벽과 우리기업에의 영향	7
1. 對 EU 주요 수출품목별 TBT, 환경규제와 영향	7
2. 기타 비관세장벽 및 기업 피해사례	24
3. 한-EU 상호인정협정 체결 가능성	28
III. 시사점	29

I. EU의 FTA 정책과 한-EU FTA 추진 경과

□ EU의 FTA 정책

- EU 통상부문 중심과제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수출확대를 위한 WTO DDA 협상에서의 균형된 결과 도출에 있었으나, 최근 아시아, 중남미, CIS 지역과 FTA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GCC(걸프협력회의), 아세안 등 지역 협력체와의 FTA 및 해당지역 개별 국가와의 FTA 추진 검토 본격화
-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자체제와 EU 공동체 확산에 의한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따라 유럽이외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개별국가와 FTA 협상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음.
- 한국과 FTA체결 위한 예비논의를 7월 개최하며, 아시아, 중남미국가, 러시아 등과의 FTA 추진 계획을 연달아 발표.
- 다자체제 발전을 위해 거대경제권과의 교역은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에는 소극적
- 동구, 지중해 등 인근지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경제개혁에 미진한 측면이 있으나 2007년 EU 가입 가능 전망. 2005년말 터키와 EU 가입 협상 시작하였으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와도 EU 가입 협상 개시. 보스니아, 마케도니아와도 EU 가입 협상 개시 승인된 상태임.
- EU는 현재 9개 지중해 국가와 양자간 FTA 체결한 상태로, 2010년까지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FTA를 지역간 FTA(Euro-Med Agreement)로 확대하고, 서비스 및 투자부문까지 포괄하는 자유화 추진 예정.

○ EU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추진 현황

- 기체결: 유럽,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체결국은 칠레, 멕시코 정도임.

경제통합 (EU)		- '2005.5.1 EU 25개국으로 확대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러스 등 10개국 추가 가입
관세동맹		- 터키('95.12), 안도라('91.7)
FTA	유럽	불가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구)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지중해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튀니지
	기타지역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 협상진행중

대상국	유형	참고
MERCOSUR (남미공동시장)	FTA	2000년 협상개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걸프협력회의 (GCC)	협력 및 자유무역	1990년 협상개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유로-지중해 공동협정	1998년 협상개시 2004년 10월 종료. 미 조인 상태
터키	서비스 및 공공조달 자유화에 관한 EC- 터키 공동결의	기존 관세동맹을 서비스자유화까지 확대하기 위해 2000년 협상개시
알바니아	안정 및 공동협정 (SAA)	2003.3월 협상개시
CEDEAO ¹ (서아프리카)	경제협력협정	2003.10월 협상개시
CEMAC ² 및 Sao Tome and Principe (중앙아프리카)	경제협력협정	2003.10월 협상개시
COMESA 16개국 ³ (남동아프리카)	경제협력협정	2004.2월 협상개시
CARIFORUM 15개국 ⁴	경제협력협정	2004.4월 협상개시
SADC ⁵ 7개국	경제협력협정	2004.7월 협상개시
ACP 14개 태평양 국가 ⁶	경제협력협정	2004.9월 협상개시

1. Benin, Burkina Faso, Capo Verde, Ivory Coast, Gambia, Ghana, Guinea, Guinea Bissau, Liberia, Mali, Niger, Nigeria, Senegal, Sierra Leone, Togo
2.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Republic of Congo, Gabon, Equatorial Guinea
3. Burundi, Comores, Djibouti, DR Congo, Eritrea, Ethiopia, Kenya, Madagascar, Malawi, Mauritius, Rwanda, Seychelles, Sudan, Uganda, Zambia and Zimbabwe
4.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Commonwealth of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S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and Trinidad and Tobago
5. Angola, Botswana, Lesotho, Mozambique Namibia, Swaziland, Tanzania
6. Cook Islands, Fidji, Kiribati,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Nauru,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Samoa, Tonga, Tuvalu, Vanuatu
(자료 : EU DG Trade)

- 추진 검토중

대상국	현황
한국	- 7, 9월 두차례에 걸쳐 예비 논의 개최 - 2007 년초 협상개시 전망
기타 아시아국가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EU 의회에서 '아시아지역 FTA 체결할 수 있는 후보 국가들의 의사를 타진 하고 있다.' 고 언급. ('06.3) - 이와 관련, 한국,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후보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남미 6개국	- '06.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EU-중남미 정상 회담직후 EU-중남미 6개국간 FTA 협상 연내개시 합의 발표 * 대상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 안데안 4개국(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도 향후 FTA 개시에 대해 검토기로 합의
러시아	-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WTO에 가입시 이들국과 FTA 추진 예정 * 러시아 에너지산업부문과 협력이 주목적

○ 한국과의 FTA 체결 추진 가능성

-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유럽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WTO체제라는 다자협상의 틀을 유지하면서 FTA 추진이 가능한 적합한 상대국으로 인식

□ 한-EU FTA 추진 경과

- '05.12월: 한국 총리 EU상의 오찬에서, EU측에 한국과 FTA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
- '06.5월: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EU무역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체결위한 예비논의 추진 제안, 우리측 통상교섭본부도 이에 동의(필리핀)
- '06.7.19~20: 1차 예비논의 개최 (브뤼셀)
 - 비관세장벽/규제, 기술표준(TBT), 동식물검역(SPS), 정부조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논의 진행
- '06.9월중: 2차 예비논의 개최 (서울)
- 2007년초, 또는 한미 FTA 협상이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공식 협상 개시 선언 예상

II. EU의 비관세장벽과 우리기업에의 영향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은 관세 이외의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규제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예: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 등), 환경규제, 통관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수입규제, 원산지규정 강화, 수량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해지고 있음.
- WTO 체제 출범후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 측정이 모호하고 다자간 협상이 어려운 특성을 지님.
 -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고 있으며, 한-EU FTA 협상이 개시되어도 비관세장벽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아래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장벽을 제외한 상품교역 관련 EU의 기술장벽(TBT),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을 파악하고, 우리기업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음.

1. 對EU 주요 수출품목별 TBT, 환경규제와 영향

전기·전자

- 전기, 전자제품 관련 비관세장벽은 표준, 안전, 환경 관련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전자파, 유해물질 관리제도 등 안전규제와 함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유황,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규제, 도장, 판금, 용접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이 규제 대상임.

□ 전자파 관리제도

-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및 조명기구에 대해서 1996.1월부터 전자기파(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지침(89/336/EEC) 적용중.

□ 유해물질 관리제도 (RoHS)

- 관련규정: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2006.7.1발효)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시, 해당제품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해성이 덜한 물질로 대체토록하는 규정
 - 대형가정용품, 소형가정용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백열등, 가정용 조명등 등 10개 품목군에 적용
 - 사용금지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 4개 중금속과 PBB, PBDB 2개 내화제 등 6개 물질. 단, 사용금지된 물질 가운데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임.
 - 단, 2006.7.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 EU집행위는 현재까지 업체들로부터 100여건의 예외 허용 신청을 접수, 이중 96건이 검토된 가운데 76건은 기각, 20여건에 대해 예외적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PDP 內 산화납 (lead in lead oxide glass used in PDP)' 의 사용예외를 신청하였고, 지난 6.28일 표결을 통해 동건이 승인된바 있음.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RoHS 지침 발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6개 물질의 대체재 확보문제와, 공정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등이 국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콘텐서의 경우 기존 가격의 15% 정도 원가 상승 부담)

- EU 회원국 마다 시행법 내용 및 위반시 범칙금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적지 않은 혼란과 비용부담 우려.

□ 폐가전 처리 지침 (WEEE)

○ 2003.2월 EU 관보(L37)를 통해 정식 공고 (2007.1월 발효)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재활용 비율과 폐가전 수거의무를 규정. 회원국들은 2005.8.13일부터 국내 시행법에 의거, 동 지침의 주요 요구조건과 의무사항을 이행해야함.

○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유럽 역내산 및 수입품 여부를 불문하고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2006.7월부터는 이중 8개 품목군에 대해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 금지 의무도 적용됨.

○ 대형 가정용기기, 소형 가정용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용품, 의료기기, 통제. 감독기기, 자동판매기 등 10개 품목군이 대상

- 전압 A/C 1천V 와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전자제품이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
- 주요 가전제품별로 재생,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을 설정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가정으로부터 폐가전 무료 수거 의무를 규정

- 제조업체는 신제품 공급시 해당 폐가전이 무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거 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음.

○ 각 품목군별 재생 비율 의무화

<1단계 재생 비율>

- 2006.12.31일부터 적용되는 재생 비율로, 아래표와 같음
- 적용대상 가전제품은 10개 품목군으로 구분되어, 품목군별로 재생 비율 의무화

<2006.12.3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화율>

품목군	대형가전제품
대형 가전제품 및 자동판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very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80%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5%
IT와 통신장비, 가전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very : 기기당 평균 중량의 75% 이상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65%
소형 가전기기,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통제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very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0%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50%
가스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재료 재사용/리사이클링 비율이 램프 중량의 최소 80% · 2004년 8월 13일까지 원재료 사양을 포함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12.31일까지 recovery,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 설정

- 주1) 각 품목군별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함
- 주2) 재생(recovery) : '복원'으로도 불리며, 열에너지로 이용 및 재활용을 포괄
- 주3) 재사용(reuse) : 동일 용도로 재사용
- 주4) 리사이클(recycle) : '재활용'으로도 불리며,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여타 목적으로 다시 사용

<2단계 재생 비율>

- 2008.12.31일까지 EU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 의견을 받아 결정

○ 수거 비용 부담

- 2005.8.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각 제조업체들은 폐기 전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2005.8.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며, 동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책정됨.
- 동 지침 발효 후 8년 동안 제조업체는 신제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수거, 처리 및 폐기하는 비용을 알려줄 수 있으며, 대형가전제품의 경우는 10년의 경과기간이 인정됨.

○ 특정 물질 분리 의무

-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함

<폐가전으로부터 최소한 별도 수거,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이나 부분품>

PCB, 스위치와 같은 부분품을 포함한 수은, 배터리, 휴대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B, 칼라토너와 토너카트리지, 형광물질을 함유한 플라스틱, 석면폐기물 및 석면을 함유한 부분품, 브라운관, CFC/HCFC/HFC/HC, 가스 램프, Liquid crystal displays, 외부전선, 세라믹직물을 함유하는 부분품, 방사선물질을 함유하는 부분품, 축전지(electrolyte)

- 브라운관,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함
 - 브라운관: 형광코팅물질
 - 냉매와 같이 오존층파괴물질이거나 지구온난화 물질을 함유하는 장비 : 동 가스가 적절하게 추출, 처리되어야 함. 오존층 파괴 가스는 해당 EU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가스램프: 수은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회수/재활용망 구축을 제조업체 책임하에 실시토록 되어있어, 우리 수출기업 비용상승 우려
(냉장고의 경우 국내시장 가격의 3~4%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특히 최근 가전제품 교체 주기 감소에 따라 폐가전 양도 증가할 것인 바 동규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예상.

□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

- EU 집행위는 2004.8월 전기·전자기기나 전열기기와 같은 에너지소비 제품(EuP, Energy Using Products)의 에코디자인(eco-design) 지침안을 정식 제안
- 2005.4월 이사회 및 집행위간의 타협안을 유럽의회가 승인하여 사실상 집행위, 이사회 및 의회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법규화 절차만 남은 상태임.
- 집행위 제안대로 채택될 경우 동 지침상의 의무가 실제로 발효되는 시기는 2006.7월이며, 회원국은 2006. 12. 31까지 국내 이행법을 제정해야 함
- ‘에코디자인’ 이란 제품의 디자인 설계단계부터 사용과 재활용 단계까지 친환경 프로세스를 강제화하기 위한 지침임.
- 한편 동 에코디자인 지침은 집행위로 하여금 이들 제품의 대기상태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별도의 조치 추가 마련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라벨링 의무 부과를 명시하고 있음
- 대상 품목은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 화석연료, 재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임.
-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군이 해당될지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언급이 없이, 유럽의회는 향후 2년 내 다음과 같은 8가지 품목군에 대해 먼저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결정. 이 순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순서들임.

- 난방기기, 물 가열기(예 : Gas and oil-fired single central heating boilers)
 - 전기모터기기(예 : Circulation pumps for domestic and small commercial central heating systems)
 - 조명기기(예 : 가로등)
 - 가정용 전기제품(예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 사무용 기기(예 : 복사기)
 - 소비자용 전자제품(예 : Portable PC를 포함한 PC)
 - 냉·온풍기(예 : Room Air Conditioners<12kW)
- 2007.3월부터 EU에 수출되는 에너지 사용제품은 EuP 지침을 준수하여 제조되었음을 의미하는 CE마크 부착이 의무화됨.
- 동 지침은 새로운 법규나 규정, 혹은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과 업체가 CE 마크를 비롯한 기존의 제반 국별 및 EU 법규를 적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적합성 평가결과 CE마크가 부당하게 부착된 것으로 판명되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역내시장 유통이 금지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특정산업이나 품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작동에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전제품에 해당되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칠 전망이다.
 - 해당제품 수출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사용 및 재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협력업체 환경평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등 부담 증가.

□ 화학물질 등록 승인제 (REACH)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System) 최종 법령안 2006.10월 채택, 2008년 발효 예상.
 -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안전한 취급방법 등을 등록하고,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 및 위험성 평가의 책임소재를 EU 각국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제품 생산자로 변경하여 화학제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금지 확대. 기존 금지물질외에 2003/34EC, 2003/36/EC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추가 판매 금지
 - * 2003/34/EC: 2005.1.15일 이후 코발트, 디클로라이드, 카드뮴플루오라이드, 아조벤젠 등 총 25개 물질 판매 금지
 - * 2003/36/EC: 2004.12.25일 이후 부탄, 이소부탄, Furam, Formamide 등 41개 물질 판매 금지
- 페인트/자동차 refinishing 제품 VOC(유기화합물 배출량) 기준 제정
- 2007년부터 페인트와 안료, 자동차 refinishing 제품의 휘발성 VOC 배출량을 연간 50% 감축 예정
 - 관련 법규 : Directive 2004/42/EC (L 143, 2004.4.30)
 - 적용대상 품목 : 페인트와 니스, 일반 페인트 및 니스와, 자동차용으로 크게 양분
 - 규제대상물질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 일반 페인트 및 니스의 경우 17개 세부 품목군으로 나뉘어지며, 이들 세부 품목군별로 각각 2007.1월부터와 2010.1월부터 2단계로 나뉘어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이 달리 적용됨

- 자동차 도장(refinishing) 제품의 경우는 우선 1단계인 2007.1.1일부터의 기준만 제정된 상태임

<자동차 refinishing 제품 VOC 기준>

세부 품목군	코팅	함유량(g/l) (2007.1.1)
Preparatory and cleaning	Preparatory	850
	Pre-cleaner	200
bodyfiller/stopper	모든 유형	250
Primer	Surfacer/filler and general(metal) primer	540
	Wash primer	780
Topcoat	모든 유형	420
Special finishes	모든 유형	840

- 동 지침 발효일 이전에 만들어진 페인트와 니스의 경우 동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발효 이후 12개월 동안은 판매 가능
- 해당 상품에 대해 라벨링을 해야 하며, 라벨링에는 품목분류중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되는 최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기준, 해당물품의 최대 VOC 함유량 등을 표기해야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동 제도 시행시 EU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화학원료 뿐 아니라 완구, 섬유 등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 수출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화학제품 (350여개 업체, 10억불 수출)이 등록·심사 대상으로 추가 비용 발생 우려됨.

자동차

□ 폐차 수거 제조업체 부담

- 2002년부터 폐차 수거와 재생 시스템 구축 의무화
 - EU 자동차 폐차지침에 따르면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기차량의 수거,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체(수출업자 포함)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 폐차처리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용부담 시점은 동지침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차는 2000.1월부터, 중고차는 2007.1월부터 적용
 -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규 자동차 모델 개발 때 '재생' 측면을 더욱 중시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까지 자동차의 의무 재생 및 복원율을 자동차 총 중량의 85%, 2015년까지 95%로, 동일 기간 중 재생 및 리사이클 비율을 각각 최소 80%와 85%로 요구하고 있음.
 - 또한 2003.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차량제조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부담 초래 전망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폐차수거 및 재활용에 따른 원가 상승. EU 역내 기업보다 폐차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많아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됨.

□ 배기가스 및 소음 규제

- 배기가스 규제 (EURO IV)
 - 2005년부터 EU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4단계(EURO 4)가 발효되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산, 분진 및 smoke의 배출량 기준이 더욱 강화

- 2010년까지 모든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120g/km로 한다는 목표 하에 자동차업계와 자율협정 체결, 자동차 사용자의 연료 효율성이 높은 차량 선택을 촉진하는 조치, 對소비자 연비 정보 제공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운영
- 집행위는, 예정대로라면 2008년 중순부터 디젤차의 분진(PM)과 질산배출 한도량이 크게 제한된 차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인 EURO 5 기준안을 2005.12월 말에 제안하여 현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희 및 수렴 등 법안으로 도입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
- 상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어 경상용차의 경우 2005년(지침 98/69/EC)부터, 중상용차는 2008년(지침 1996/96/EC)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HC), 질산 및 분진에 대한 2단계 기준이 도입됨.
- 경상용차의 경우 운행 5년이나 주행거리 8만km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내구성 검사 의무화되며, 중상용차에 대해서도 유사 규정 제정 추진중.
- 승용차의 OBD 장착도 의무화되었으며, 모터사이클의 배기가스 기준도 2006년부터 2단계 기준이 도입되어 강화됨

<EU집행위 EURO 5 기준 안의 주 내용>

● 디젤 자동차: 분진 배출 80%, 질산 배출 20% 감축

	분진(mg/km)	NOx(mg/km)
Euro 3(2000-2004.12.31)	50	500
Euro 4(2005.1.1일부터)	25	250
Euro 5(안)	5	200

● 가솔린 자동차

- NOx 와 HC 배출 25% 감축
- Direct injection petrol 자동차의 불충분한 연소에서 오는 분진의 배출량 제한

	HC(mg/km)	NOx(mg/km)
Euro 3(2000-2005)	200	150
Euro 4(2005년 부터)	100	80
Euro 5(안)	75	60

● 밴 자동차: 분진 배출 90%, 질산 배출 20% 감축

● SUVs

- 지금까지 경상용차에 대한 배출기준 사용이 허용되던 것을 폐지

○ 소음규제

- 자동차 소음규제의 경우 4륜이상 자동차 소음규제(지침 70/157/EC), 이륜 및 삼륜자동차 소음규제(지침 97/24/EC), 타이어와 도로 표면간의 Rolling 소음 규제(지침 2001/43/EC)가 대표적인 규제이며, 기타 분야의 소음규제 법규는 중장비(굴삭기 등)와 트랙터 소음규제 지침(지침 2000/14/EC) 등이 있음.

○ 우리산업에의 영향

- 기술개발 및 생산라인 변경 비용 발생 전망.

포장재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 관련규정: Directive 94/62/EC (1994.12.31 발효)

- 동규정은 환경기준 미달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생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2004.2)은 2008.12월까지 한층 강화된 재생 및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 1997.12.31일 이후 재사용과 재활용성에 관련된 기본 요구에 부적합한 포장재의 유통 금지
- 대상품목은 공업용, 상업용,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포장재와 폐기물.

- EU 이사회 합의(2005.2.8)에 의해 신가입국에 대해 재생 및 리사이클링 비율 준수 기한을 연장기로 함.

- 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러스,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 몰타 : 2013년 12월 31일 까지
 - 폴란드 : 2014년 12월 31일 까지
 - 라트비아 : 2015년 12월 31일 까지
- 2005년 12월 21일 EU 집행위는 "life-cycle"에 기초한 신폐기물 정책 전략을 제안하면서 회원국간 리사이클링 목표 설정에 합의가 어렵게 되자 향후 적용될 리사이클링 문제와 달성해야 할 목표 기준은 각 회원국에 맡기기로 함.
- 복원비율(recovery) 및 리사이클링 비율, 그리고 동 기준 준수 시한으로써, 현재까지 나타난 집행위, 유럽 의회 및 이사회간의 이들 이슈별 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행 지침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준수시한	2001.6.30	2006.6.30	2006.12.31	2008.12.31
복원율(recovery)	최소 50% 최대 65%	최소 60% 최대 75%	최소 60%, 최대 없음	최소 60% 최대 없음
리사이클링율	최소 25% 최대 45%	최소 55% 최대 70%	최소 55% 최대 80%	최소 55% 최대 80%
재료별리사이클율				
- 유리	최소 15%	최소 60%	최소 60%	최소 60%
- 종이/보드	최소 15%	최소 55%	최소 60%	최소 60%
- 금속	최소 15%	최소 55%	최소 50%	최소 50%
- 플라스틱	최소 15%	최소 20%	최소 22.5%	최소 22.5%
- 목재	최소 15%	목표 없음	최소 15%	최소 15%

주: 비율 기준은 포장재 중량임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동규정 자체가 역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제조물 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역외 포장재 생산기업 및 수출기업에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CE 마크

- EU 집행위는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보호 관련 제품에 대해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CE 마크 없는 제품의 역내 유통은 금지됨.
 - 복잡한 기기일수록 인증 획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품별로 별도의 지침(Directive)을 제정하여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요구사항은 유럽표준규격(EN)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전자기기, 안전관련 제품, 완구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애로 발생
 - 국내 의료기기업체 A사는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여타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비용상의 문제로 CE마크 획득이 지연되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발생.
 - 의료기기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더해, 외국수출기업은 반드시 역내 대리인을 선정, 제조업체로 등록토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지진출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종 인증 승인기관 제한에 따른 시간·비용 중복 소요

- EU는 통제 대상품목의 테스트 및 인증 관련, 최종 승인 권한을 역내 지정 검사기관에 한정하고 있음

- 대행계약을 맺은 역외국 소재 검사기관도 테스트 및 인증을 대행할 수 있으나 대행 기관의 숫자가 적은 데다, 제품에 대한 최종 승인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EU내 지정 검사기관에 송부해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로인해 제품검사·인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

- 관련 TBT 협정

- EU가 역외국 검사기관 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인증 과정은 어떤지 비교해야겠지만
- 최종승인을 위해 역외 검사기관이 EU내 검사기관을 통하게 하는 것은 업무 중복 야기
- 관련 규정

- WTO TBT 협정 6조 1항, 4항

6.1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6.1.1 수출회원국의 관련 적합판정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의 지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기술능력. 이와관련, 국제표준기관에 의하여 발표된 관련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준수가 예를 들어 인증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6.1.2 적합판정결과의 수락을 수출회원국내의 지정된 기관이 내린 적합판정 결과로 국한하는 문제

6.4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

▪ WTO TBT협정 부속서 (Code of Good Practice 8항)

8.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다른 표준기관들 또는 관련 국제적 또는 지역적 표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 또는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표준기관은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에 대한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표준기관 역시 관련 국제표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회원국별 상이한 인증절차로 인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

- 일부 품목의 경우,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가 운영되고 있어 EU 역내에서도 해당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 발생
 - 회원국간 통합법률(harmonized legislation) 도입 지연, 적용 및 해석상의 부조화, 특정부분에 대한 지침간 중복문제, 제지침간 회색지대 존재,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불명확한 마크 및 라벨링 규정 등 문제 존재.
- 관련 규정
 - EU 회원국간 표준·인증절차의 통일은 양자협상 대상
 - EU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WTO TBT협정 2조 9항의 2, 3에 의거 명확한 규명 요구 가능

2.9.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술규정이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2.9.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기술규정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관련 국제표준과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 프랑스 NF 마크 미취득시 시장진입 애로

- NF 마크는 농산물에서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품목군에 적용 되는 인증
 - CE마크와 비슷한 개념이나 프랑스 국내에서만 통용되며, 품목군에 따라 다음 네가지 세부 분야로 나누어짐.
 - NF mark: 공산품 및 소비재
 - NF environment: 환경, 생명공학 제품
 - NF argo-alimentaire: 농산물-식품
 - NF service: 서비스 제품
- 피해 유형 및 사례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A사는 위생관련 인증 취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 소모
 - NF 330: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관련 인증으로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선 및 장비 등에 적용.

□ 정부조달시장 관련 진출장벽

- 기술장벽
 - EU 정부조달 기관은 해당제품과 서비스에 유럽 규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 EU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럽표준 (CEN, CENELEC, ETSI) 및 규격 (ETA) 획득이 필수 요건으로 작용.
- 기타 관행
 - 조달 담당자는 위험 회피를 위해 규모가 크고 과거 낙찰 경험이 있는 기업만을 선호.

2. 기타 비관세장벽 및 기업 피해사례

□ 독일 진출기업

- 세관의 부적절한 품목분류에 따른 피해
(I사 등 MP3 player 제조업체, PDP/LCD TV제조업체 사례)
 - MP3 player, 컴퓨터모니터, LCD.PDP TV의 품목분류 부적합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 발생
 - 기존 MP3 player는 2% 관세율이 적용되나, 라디오 기능이 추가된 제품 관세율은 10%에 달함.
 - 아울러 MP3 player의 경우 독일 BITKOM에 (독일 연방 IT협회)에 기당 2.65유로의 기기저작권료까지 지불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 LCD모니터는 무관세이나, TV수신 튜너가 내장된 LCD TV에 대해서는 14% 관세가 부과되어 현지 조립공장 설립 등 추가 비용 발생
- 과도한 법인세와 복잡한 세무 제도
 - 독일 법인세는 25%로 한국 27%에 비해 낮은듯 하나, 지방영업세로 법인세 차감금액의 15~20%를 추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는 35% 이상에 달함.
 - 아울러 복잡한 세무제도로 인해 기업이 별도 세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자발급 소요기간의 과다 소요
 - 독일 현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기업 인력배치가 지연되는 등 불편 초래
 - 지역에 따라 편차 있으나 주재원 정식 비자발급에 2~3개월 기간 소요

□ 영국 진출기업

- 디지털카메라 렌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요망 (S사)
 -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Mpeg 4 탑재 제품에 대한 EU의 관세부과 여부에 따라 카메라 수출에 큰 영향 발생. 현재는 Mpeg 2가 미국 및 EU의 디지털 전송규격으로 관세 미부과 대상임.
 - Mpeg 4 제품의 우수성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Mpeg 4 탑재가 증가하고 있어 EU 수입관세 부과시 수출 애로 예상됨.

□ 프랑스 진출기업

- 휴대용 전자제품에 대한 건강지수 명기 규정 관련 애로 (A전자)
 - 프랑스에서는 음성재생장치 등 휴대용 전자 제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 표면에 명기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MP3 player의 경우, 소형인 관계로 관련 정보 기재 공간이 협소하여 애로를 겪고 있음.
- 세관 행정 지체로 인한 피해 (B전자)
 - 에어컨 신제품 수입시, 프랑스 세관 당국의 기술시험이 성수기인 여름까지 종료되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바 있음.

□ 원산지 규정상 과도한 역내산 부품 사용 비율 규정

- EU 역내산 인정을 위한 현지부품 사용 비중 관련
 - EU 원산지규정상, 전자제품은 40% 이상의 역내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역외관세부과 및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對EFTA 지역 수출시 현지부품 사용 비중 관련
 - EU 역내 기업이 스위스, 노르웨이 등 EFTA 대상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해당 제품의 EU산 인정을 위한 현지부품 조달 의무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문제 발생. 특히 해당 부품의 가격, 품질경쟁력에 문제가 있거나 구매가능 부품이 많지 않은 경우 문제 발생.

□ 조세특례국 소재기업과 거래시 비용공제 제외로 인한 피해 (이태리)

- 현 황
 - 이태리 소득세법(Italian Income Tax Act, D.P.R 22.12.1986, no 917) 110 조, 10, 11항에 따르면, 이태리 기업이 비EU 국가이자 조세특례국으로 지정된 국가 기업과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이로인해 이태리 기업이 조세특례국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제품 수입시 수입금액을 비용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 발생.
 -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이태리기업은 해당 비용의 발생 사실과 목적, 조세특례국 소재 기업의 실질적 기업활동 사실을 증명해야함. 한국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혜택을 한국기업이 받지 않았다는 것과 한국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수행 사실을 증명해야함.
 - 이태리 조세당국은 외국기업의 실질적 상업활동의 증명 또는 조세특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증명을 위한 특정 서식이나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이탈리아 정부의 조세 특혜지역 구분 기준 (D.M 23-01-2002)
 - 1항: 포괄적 조세 특혜 지역으로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 포함
 - 2항: 일부 예외를 인정한 포괄적 조세특혜지역으로 바레인 등 4개국
 - 3항: 일부 경우에만 조세특혜제도가 있는 지역으로 한국, 앙골라,도미니카 등 14개국을 열거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TILL, Tax Incentive Limitation Law)에 의한 특혜 명시**

○ 피해유형 및 애로 사항

- 이태리 조세 당국의 제도 운영상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국내기업들에게 행정상의 혼란 초래
- 이에 대사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증명서를 발급토록 조치한바 있음.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이 조세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한-EU 상호인정협정 체결 가능성

○ 현 황

- EU 는 역내 회원국간 규격 및 표준의 시험,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도 전기, 통신기기, 해양장비 등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바 있음.
- 우리나라와는 90년대 후반부터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가 진행된바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MRA 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협상 대상 산업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도 세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협상이 지연되 왔음.

○ 체결 관련 의견

- MRA는 무역관련 기술 장벽 완화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으로서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간, 비용을 효율적으로 해소가능
- 특히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MRA 체결시 불필요한 규제 강화 가능성과, 경쟁국의 관련 인증 취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 * 미국은 '98년 EU와 체결한 전기안전 부문 MRA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가운데, 최근 FTA체결시 MRA를 협상분야에서 제외하는 추세임.
- 미국 내에서 MRA를 지지하는 업계는 통신업계가 유일. 전기업계 등은 연방정부 비규제 전기제품에 MRA가 적용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연계될 우려가 있다며, MRA 체결에 반대
-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 협상시도 MRA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협상 자체가 매우 기술적이고 장기간을 소요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MRA를 제외하는 추세임.

Ⅲ. 시사점

-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의 다양성, 규제의 국내외 차별성 판단 여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세장벽에 비해 제거가 용이하지 않음.
 - GATT 체제 이후 다자간 협상을 통한 꾸준한 노력과 관세철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는 관세장벽의 인하를 초래했으나, 비관세장벽은 규제의 광범위성과, 국내외 차별적 요인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수량제한, 수입제한 등 전통적 분야의 비관세 조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환경, 안전, 표준 관련 규제가 확산되고 있음.
 - 기술장벽(TBT)의 경우, 1995년 WTO 출범 당시 365건에 불과했던 통보건수가 2005년 771건으로 증가.

- EU의 비관세장벽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일부 규제 사항은 회원국간 불일치로 인해 우리기업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EU는 유럽지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 자국 생산자들만 충족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도입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효과를 가지며, 식품, 안전 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일부 표준, 인증 제도는 역내 국가간 불일치로 인해 역외국 기업의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한-EU FTA에서도 비관세장벽은 주요 의제로 논의 전망
 - 미국 업계와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주요 의제로 삼았으며, 이는 한-EU FTA 협상에서도 유사하게 작용 예정임.
 - 비관세 장벽의 광범위함과, 차별성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EU 비관세장벽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EU FTA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